

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27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3년 5월 25일
- 나. 제안자: 전철규 의원 외 9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- 라. 상정일자: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6. 2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신찬호 의원)

□ 제안이유

현행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구청장에게 미용업자에 대한 관리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어,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
(안 제3조)
- 나.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
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3조, 제20조
- 2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편성

다. 해당부서: 위생관리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5. 31. ~ 6. 8.) 결과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- 본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우리 구 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1조에서 강서구의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미용서비스 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
 - 나.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·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
2. “미용서비스 사업자”란 이·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○ 안 제3조에서는 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였고

제3조(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·교육·훈련
2.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
3. 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
4. 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
5.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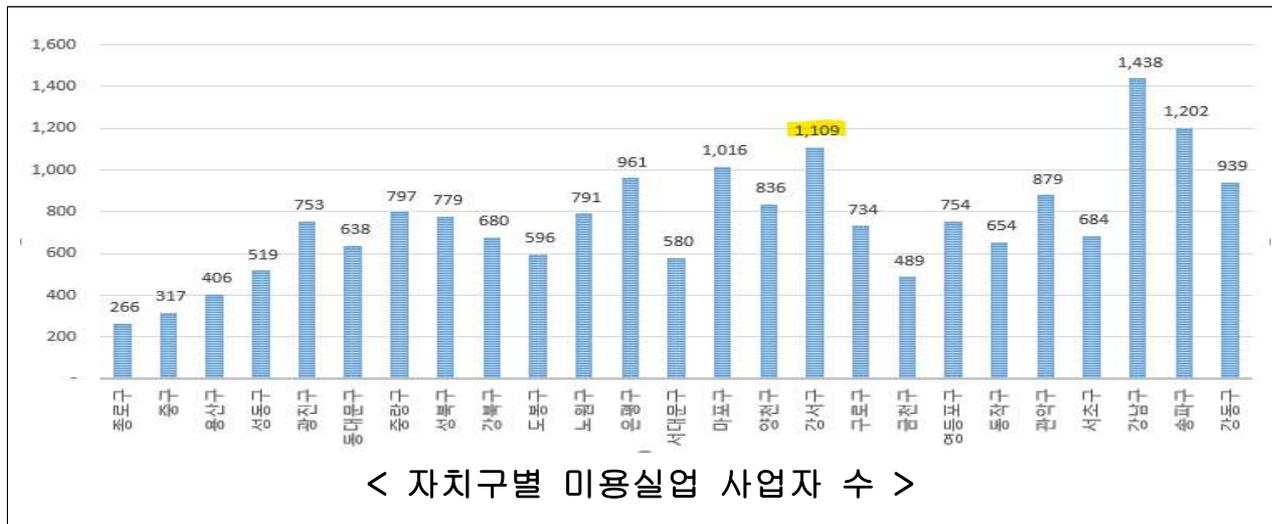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·연구소·학원·협회 등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○ 안 제4조에서는 관련 기관·단체·협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여, 보다 효과적인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·유지하기 위한 미용서비스 사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서 국민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여 전국 11만개 규모로 확인되고 있으나
- 코로나19가 시작된 최근 몇 년간은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업종 특성상 감염 우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,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

- 또한 관내 미용실업 사업자 수(1,109명)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(1,438명), 송파구(1,202명) 순을 잇는 최다 수준임을 고려하면¹⁾



-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- 다만 미용서비스 산업이 양적 증대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, 여타 산업들과의 균형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1) 출처: 국세통계포털 사업자현황(2023년 2월 100대 생활업종)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13조(직무능력 향상 지원)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업종별 지원) 정부는 산업의 구조,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공중위생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5. “미용업”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, 머리, 피부 및 손톱·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.

- 가. 일반미용업: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,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- 나. 피부미용업: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·피부관리·제모(除毛)·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- 다. 네일미용업: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(化粧)하는 영업
- 라. 화장·분장 미용업: 얼굴 등 신체의 화장,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
- 바. 종합미용업 :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